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축하금 등을 확대 지원하고 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재정비(안 제2조)
- 지원 대상을 명시(안 제4조)
- 지원 기준 및 자녀의 순서 산정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 지원 안내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6조, 제7조)
- 환수 및 지원의 중단 규정 마련(안 제8조)
- 관리 대장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및 제21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자 제출된 안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에 대해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지원일까지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을 합한 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첫째 자녀는 100만원 이내, 둘째 자녀는 120만원 이내, 셋째 자녀는 200만원 이내, 넷째 자녀는 300만원 이내, 다섯째 이후 자녀는 400만원 이내로 규정하여 기존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급되었던 출산축하금을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지원금은 분할 지급하도록 하였음.
-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읍면동장은 출생신고 접수 시 출산 축하금 등의 지원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고, 지원 신청은 읍면 동장에게 하도록 하여 지원금의 지급 누락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음.
- 부칙에서 본 조례 시행(2020. 1. 1.) 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였음.

○ 검토 결과,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구미시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4명에서 2018년 1.11명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이며, 현재 우리시의 출산축하금 등 지원 규모는 도내 최저 수준으로 인근 지자체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만큼, 40대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젊은 도시로서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합계출산율 >

(단위: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전 국	1.205	1.239	1.172	1.052	0.977	
경 북	1.408	1.464	1.396	1.256	1.167	
구 미	1.438	1.440	1.343	1.201	1.110	

* 합계출산율 :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 도내 타시군 출산축하금 등 지원현황 >

(2019.7월 기준)

(단위: 명/만원)

구 분	출생아수 (2018년)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금				비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이상	
구 미	3,415	10	60	160	260	다섯째이상 360만원
포 향	3,214	20	60	220	220	
경 산	1,905	50	120	360	1,200	
경 주	1,287	10	120	240	1,200	
김 천	1,024	80	340	680	900	
칠 곡	905	10	130	200	440	다섯째이상 800만원
상 주	470	360	720	1,800	2,400	다섯째이상 1,680만원
군 위	79	110	160	820	820	

-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시 차원에서 출산을 지지하고 적극 장려한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공공의 출산장려 지원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 가임 세대의 인구 유출 방지와 출산율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다만, 본 조례안대로 지원할 경우 매년 금년 대비 약 22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열악한 재정 여건 하에서 재정적 뒷받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지원금 증액에 그치지 않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출산을 위한 직접적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출산 장려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